인지세 납부 안내문

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수입인지 분실시 기간에 따라 본 세액의 300%까지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: 15만원, 10억원이상: 35만원) 정부수입인지를 아래 납부기한 내에 구입하시어 잘 보관하시고, 향후 이전등기 신청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◇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

과세대상	납부기한	기재금액	비고
부동산 분양계약서	계약체결 당일	분양대금 (총 공급대금)	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 보관
분양권 전매계약서	명의변경 승인일	실제 거래가격	

※ 관련법령: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, 제8조

◇ 세액 및 가산세 (사례: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)

구분	인지세	연체 가산세		
납부기간	계약체결일	계약일 익일~3개월 이내	3개월 초과~6개월 이내	6개월 초과
납부금액	35만원	무(과소)납부 세액의 **100%** 인지세35만원+가산세35만원 **(총 70만원)**	무(과소)납부 세액의 **200%** 인지세35만원+가산세70만원 **(총 105만원)**	무(과소)납부 세액의 **300%** 인지세35만원+가산세105만원 **(총 140만원)**

※ 관련법령: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(가산세 개정사항)

◇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및 구입방법

구분	온라인	오프라인
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)	우체국, 은행
구입방법	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② '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' 클릭 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④ '구매' 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- 용도: 인지세납부 - 과세문서 종류: 1.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- 금액: 350,000원 - 매수: 1매 ⑤ 결제 (신용카드 및 계좌이체) ⑥ 출력, 계약서와 함께 보관 ⑦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함께 제출	①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방문 ②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- 용도: 인지세납부 - 과세문서 종류: 1.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- 금액: 350,000원 - 매수: 1매 ③ 결제 (현금납부만 가능) ④ 전자수입인지 발급 ⑤ 계약서와 함께 보관 ⑥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함께 제출
	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 ※ 계약체결 당일 인지세를 납부함에 따라 등기시에는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	